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39 발의연월일: 2025. 5. 30.

발 의 자:김용태・이종배・서지영

유용원 · 조경태 · 김민전

임종득 • 유상범 • 강대식

조은희 · 성일종 · 김선교

의원(12인)

제안이유

군(軍)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인이 실제 전쟁이나 작전 상황에 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군사훈련 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군사격장 등 군사훈련이 이루어지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안 전과 생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국가안보라는 명목 하에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음.

2025년 3월에는 포천에서 군사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의 오폭 사고로 인해 심각한 민간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나,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권리구제 절차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대응 및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대규모 군사훈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제병협동훈련장 또는 공지(空地)합동훈련장에 인접한 읍·면·동 지역을 군사훈련영향지역으로 정하고, 군사훈련의 사전 안내 등으로 피해를 예방하며, 재난급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피해 보상, 긴급생활지원, 피해지역의 민군상생발전 등을 보완하여 군사훈련영향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군사훈련 주변지역에서의 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복구 및 사고 피해자의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민군상생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군사훈련영향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활한 피해복구 등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사훈련영향지역 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 다. 군사훈련영향지역에서 군사훈련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민관군협의체를 설치함(안 제7조).
- 라. 국가는 군사훈련영향지역에서 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 마. 군사훈련 중 재난급 민간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고를 수습하되.

군의 긴급대응팀이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안 제9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안 제10조).
- 사. 국가는 영향지역에서 사고의 발생에 따른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 규모나 정도에 따라 긴급생활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로 지급할 수 있음(안 제12조).
-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산업 발전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 야 함(안 제16조).
-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사훈련영향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피해를 복원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7조).
-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 18조).
- 카. 군사훈련영향지역의 시·군·구의 장은 영향지역에서 군사훈련 중 사고로 재난급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에 따라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민군 상생발전에 필요한 국방부장관의 협조사항을 포함시켜야 함(안제20조).

-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사훈련영향지역 내에서 이주 요구가 높은 지역에 주민이익공유형 산업단지를 설치하여 주민 이주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음(안 제21조).
- 파. 국방부장관은 민군상생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사훈련영향지역의 시·도지사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사훈련영향지역 안의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22조).
- 하. 군사훈련 중 군사훈련영향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 배상, 복구·지원 및 민군상생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23조).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훈련 주변지역에서의 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 •복구 및 사고 피해자의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민군상생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군사훈련"이란 육·해·공군의 주임무인 지상·해상·항공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술, 화력 시험, 사격, 화생방, 비행, 수송 등의 훈련과 관련된 국군의 모든 군사적 행위를 말한다.
- 2. "군사훈련영향지역"이란 대규모 군사훈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훈련시설 주변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한 제병협동훈련장 또는 공지(空地)합동훈련장에 인접한 읍·면·동 지역(이하 "영향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 3. "피해 배상"이란 군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 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항에 대하여 「국가배상

법」에 따라 배상하는 조치를 말한다.

- 4. "피해자"란 군사훈련 중 민간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5. "피해지역"이란 군사훈련 중 민간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사고 규모에 따라 사고 발생지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안에 포함된 지역을 말한다.
- 6. "유족"이란 피해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피해구제 및 지원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해서는 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권리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 2.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3.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돌봄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 4.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 5. 추모사업, 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 6.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 7. 유족으로서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
- 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 제4조(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군사훈련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주민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시 또는 이 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장 군사훈련영향지역의 지정 등

- 제6조(군사훈련영향지역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영향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 등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사훈련영향지역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영향지역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2. 영향지역 주민의 이주 요구 검토에 관한 사항
 - 3. 군사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피해 사고의 예방·대응·복구에 관한 사항
 - 4. 군사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5. 영향지역 민군상생발전 방안의 개발에 관한 사항
- 6. 사고 발생 지역의 민군상생발전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다.
-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군 갈등 관리, 재난 피해 구제 및지역 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민관군협의체의 설치 등) ① 영향지역의 시·군·구의 장은 영향지역에서 군사훈련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의 민관군협의체(이하 "협의체"라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책임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이때, 책임자는 사고 지역의 사고수습본부장이 겸할수 있다.
 - ③ 협의체에서 협의한 사항 중 국방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

해서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체의 구성원이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협의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⑤ 협의체의 협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군사훈련 중 발생한 사고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민·관·군 소통과 협의에 관한 사항
- 2.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 3. 피해지역에서의 민군상생발전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민·관· 군 협조 사항
- 4. 그 밖에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군사훈련 피해 예방 · 대응 · 복구

- 제8조(피해 예방 의무) ① 국가는 영향지역에서 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 제병협동훈련장 또는 공지합동 훈련장 등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영향지역에 거주 하는 주민에게 군사훈련안내문을 발송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③ 시·군·구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군사훈련안내를 위한 연락망을 생성·관리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영향지역에서 발생한 도비탄·유탄·오폭탄 등의 피해 상황을 집계하여 분기별로 영향지역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한 다.
 - ⑤ 그 밖에 피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9조(사고 대응·복구) 군사훈련 중 재난급 민간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고를 수습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 군사훈련 중 영향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지체없이 영향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 ・군・구의 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영향지역의 시·도지사등은 사고 사실을 영향지역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향지역의 시·도지사등이 사고 사실을 먼저확인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통보 전에 영향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지할 수 있다.

- 2. 군사훈련 중 민간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및 같은 법 제 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에 군의 긴급대응팀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군의 긴급대응팀은 군사 위험 물질 파악 및 제거 활동 등을 담당한다.
- 3. 피해지역의 시·군·구의 장은 군의 협력하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라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피해 상황을 조사할 경우,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감정할수 있는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지역의 시·도지사등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지원한다.
- 5. 피해조사 종료 후에는 피해지역의 시・군・구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라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국방 부장관 또는 사고수습본부와 협의하는 경우에는,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및 민군상생발전계획 수립 시 군의 협조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6. 제2호에 따른 군 긴급대응팀의 편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과이 정한다.

제4장 사고 피해 보상 · 배상 · 지원

- 제10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긴급생활지원금) ① 국가등은 영향지역에서 사고의 발생에 따른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 규모나 정도에

따라 긴급생활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가배상법」을 준용한다.
- 제13조(국가등의 책임) ① 국가등은 군사훈련 중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3조에 따라 장례비, 요양비, 수리비, 휴업배상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배상법」을 준용한다.
- 제14조(피해 보상·지원) 영향지역에서 발생한 군사훈련 사고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같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에서 배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심리상담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사고 피해지역 지원

- 제16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산업 발전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 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7조(생활환경의 개선) 국가등은 영향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피해를 복원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8조(주거대책 마련) ① 국가등은 영향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주민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수·보수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영향지역 내 사고 발생 시 해당 시·군·구의 장은 주택 파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임시주거시설 및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군·구의 장은 국방부장관의 협조를 받 을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주거시설 또는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장은 피해 주민에게 장기 주거가 가능한 임대형주택을 제공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 제공 등을 협

조하여야 한다.

- ⑤ 국방부장관은 사고 피해지역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을 우선 검토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영향지역의 시·도지사등은 제20조에 따른 민군상생발전형 산업시설 또는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의 원활한 이주를 촉진할 수 있다.
- ⑦ 시·도지사 또는 해당 시·군·구의 장은 피해지역 주민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지역 주민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장 민군상생발전계획의 수립 등

- 제19조(국가등의 시책 지원) 영향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가등의 시책 사업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 제20조(영향지역 민군상생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영향지역의 시·군 ·구의 장은 영향지역에서 군사훈련 중 사고로 재난급 이상의 피해 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라 재난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민군상생발전에 필요한 국방부장관의 협 조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② 협의체는 재난복구계획과 별개로 민군상생발전계획(이하"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1. 주거환경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 계획
- 2. 영향지역의 민군상생발전 사업 기본 계획
- 3. 주민 이익 공유형 사업 계획
- 4. 민간 또는 공공의 재원조달계획
- 제21조(주민 이주 및 이익공유형 사업) ① 국가등은 영향지역 내에서 이주 요구가 높은 지역에 주민이익공유형 산업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이주 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이익공유형 산업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영향지역의 시·도지사등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토지용도 변경, 용적률 완화, 세제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22조(미활용 군용지 사용 등) ① 국방부장관은 영향지역의 시·도지사등이 제20조에 따른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영향지역 안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를 시·군·구

- 에 수의의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시·군·구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영향지역 의 시·도지사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향지역 안의 미활용 군용 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영향지역의 시·도지사등은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및 벌칙

- 제23조(재원 마련 의무) 국가등은 군사훈련 중 영향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 배상, 복구·지원 및 민군상생발전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4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관리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5조(관련 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 보상을 지급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 시행 전 2년 이내에 실시한 군사훈련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군사훈련영향지역의 피해 보상 및 지원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한다.